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찬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36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4.

발의자 : 박찬우 · 김규환 · 김선동

김성찬 · 김용태 · 김태흠

박덕흠 · 유민봉 · 이군현

이명수 · 이은권 · 정용기

주승용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‘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’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,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, 공공기관 등에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

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 시(인구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)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·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(안 제15조제1항).
- 나. 국가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제3항 신설).
- 다. 국토교통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·평가와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제4항 신설 및 제37조제5항 신설).
- 라.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50조제3항 신설).
- 마.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의2 신설).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가목 중 “「해운법」”을 “「해운법」, 「철도사업법」, 「도시철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조사·평가를 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”를 “조사·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를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 또는 군수

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2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·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
2. 제42조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의 수립·시행
3.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·징수
4.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
5.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
6.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교통물류운영자”란 교통수 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 설을 경영·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	4. -----.
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해운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, 허가, 인가,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, 신고 등을 한 자	가. -----.
나. · 다. (생 략)	「해운법」, 「철도사업법」, 「도시철도법」 -----.
5. ~ 15. (생 략)	-----.
제15조(지속가능성 조사·평가 등)	나. · 다. (현행과 같음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	5. ~ 15. (현행과 같음)
	제15조(지속가능성 조사·평가 등)
	① -----.

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, 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·평가를 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조사·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를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p>제37조(보행교통 실태조사 등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⑤ (생 략)</u></p> <p>제50조(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7조(보행교통 실태조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국토교통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u></p> <p>제50조(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50조의2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</u></p>
---	---

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·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
2. 제42조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의 수립·시행
3.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혼잡 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·징수
4.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버스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
5.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6.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